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등 행위 처벌 등〉
■ 정진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98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2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등 행위’ 처벌 마련 (안 제18조제4호 신설)	7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진욱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6조제1항)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2호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u>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u> ”란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 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u><신설></u>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생략)	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 2.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행위 또는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²⁾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음³⁾.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그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특허청 내부 규정에 따라 도입·추진하다가 2014년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⁴⁾.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3) 즉, 국내에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에 대한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4) 참고자료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참고로,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매년 53~89건이고, 지급금액은 매년 7,700만원~1억 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⁵⁾, 적발된 위조상품의 가액은 5년간 약 1조 1,3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신고 및 지급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신청건수(건)	59	100	101	38	21	319
지급건수(건)	53	89	83	27	13	265
지급금액 (백만원)	77	107	94	54	26	358
위조상품 가액* (억원)	1,120	1,900	1,445	6,687	220	11,372

자료: 특허청

그런데 이러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사실상 위조상품 유통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예방과 단속이 필요한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⁶⁾.

유사 입법례로, 산업기술 해외유출의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⁷⁾.

5) 2023년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예산: 103백만원

6)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영업비밀 해외유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이용빈의원 등 16인, 2023.10.10.)되기도 하였음.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포상금 관련 입법례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개·알선 등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영업비밀 유출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 행위 등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신고 시점에 따른 신고포상금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법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례⁸⁾를 둘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사전에 단속하기 위한 취지이나, 일반 국민이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사실상 내부 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소액의 신고포상금(1,000만원 상한⁹⁾)만으로 신고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¹⁰⁾.

8) 유사 입법례: 의료급여법 부칙(법률 제19297호, 2023.3.28.)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및 받도록 한 자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및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3조의8(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는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은 한 사람이 1년간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0) 예를 들면,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기술 유출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2017년부터 2024년11월까지 총 9건에 불과하며, 지급된 포상금도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2017년 1명 150만원, 2022년 2명 500만원, 2023년 2명 500만원, 2024년도 4명 500만원). 참고로, 2024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은 500만원임.

참고로, 특허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이 영업비밀 수사업무를 시작한 후 영업비밀 침해·유출된 사건이 매년 10~33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사경 영업비밀 침해·유출사건 접수 현황

구분	'19.4.~12.	'20	'21	'22	'23	합계
국내(건)	10	13	29	17	30	99
국외(건)	-	2	1	5	3	11
소계(건)	10	15	30	22	33	110

(*) 영업비밀 침해 수사 개시('19.4)

자료: 특허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등 행위’ 처벌 마련

(안 제18조제4호 신설)

개정안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¹¹⁾(이하 “영업비밀 처벌대상 행위”라 함)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표 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11)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u>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u> <u>또는 유인하는 행위</u>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¹²⁾,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¹³⁾.

최근 영업비밀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수단으로 핵심 인력 유출이 다수 활용¹⁴⁾되고 있어, 영업비밀 침해를 전제로 한 이직 알선행위에 대한 대응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¹⁵⁾.

12)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8조(벌칙) 등

13)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개·알선 또는 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 바. (생략)

14) 「산업기술 핵심인력 유출 브로커 대응강화 방안 연구」(경찰청 안보수사국, 2022)

15)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22년) 주요 내용

- | |
|---|
| ○(유출경로) 국내·국외 유출 모두 ‘중도 퇴직자’에 의한 발생비율이 가장 高
- 국내 유출 피해기업 중 39.8%, 해외 유출 피해기업 중 26.9%
○(유출방법)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스카우트’가 상당수
- 국내 유출 피해기업 중 20.4%, 해외 유출 피해기업 중 26.9% |
|---|

특허청의 영업비밀 실태조사 자료¹⁶⁾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 대상기관의 내부자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⁷⁾.

그러나 현행법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형법」에 따른 교사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하거나¹⁸⁾, 「직업안정법」에 따라 적법한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한 상태임¹⁹⁾.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유출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16) 특허청 영업비밀 실태조사('23년) 중 관련 내용

- | |
|---|
| ○(유출경로) 국내·국외 유출 모두 '내부자'에 유출이 60.8%로 가장 높음
* 퇴직자 42.9% + 재직자 17.9%
○(유출방법)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스카우트'가 28.6%로 가장 높음 |
|---|

17) 매일경제, “연봉 4배 줄테니 오라”...대법해진 브로커 유혹, 기술유출 비상, 2023.06.05., <https://www.mk.co.kr/news/business/10752829>

머니투데이, ‘최소 21조 산업기술유출 피해...브로커 처벌 근거 미비, 해법은?’, 2023.03.0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0811025495357>

18)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2조(중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②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19)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이하 생략)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는 「형법」에 따른 교사죄 또는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함을 목적²⁰⁾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범죄 억제력의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민·형사적 제재 규정을 모두 두고 있다는 점²¹⁾에서 동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²⁾.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여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 원 대표발의, 2024.10.4. 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2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중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장 보칙** 중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제18조(벌칙)

22) 개정안 제2조제3호의2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제2조제3호 가목부터 바목)’에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함.

문 의 처
02)6788-5459

※ 참고자료

1.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 개요

□ 현황

- 위조상품의 제조·유통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2006년도부터 도입·시행
- 이를 위해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특허청 훈령 제440호)을 제정(2005. 12. 30.)하여 2006년부터 시행
-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 마련(2014.1.31.시행)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2023.1.1. 기준

적발금액	포상금액	적발금액	포상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500만원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200만원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700만원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300만원	500억 원 이상	1,000만원

※ 적발금액: 상품 물량(판매수량 + 재고량) ×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함

출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006~2023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집행 실적		위조상품 가액 (억원)	구분	집행 실적		위조상품 가액 (억원)
	신청/지급 건수	지급금액			신청/지급 건수	지급금액	
2006	126/107	323.1	3,430	2016	117/82	103	1,245
2007	109/89	250	3,170	2017	100/53	103	1,841
2008	147/84	219.7	3,573	2018	90/73	120.5	2,530
2009	324/195	249.6	2,822	2019	59/53	77	1,120
2010	224/186	200	3,063	2020	100/89	107	1,900
2011	262/219	215.6	4,279	2021	101/83	94	1,445
2012	215/163	152.5	6,509	2022	38/27	54	6,687
2013	122/101	84	1,536	2023	21/13	26	220
2014	102/78	103	1,249	합계	2,367/1,767	2,585	48,535
2015	110/72	103	1,916				

2. 포상금 관련 입법례

법률명	관련 조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u>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u>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u>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u> 할 수 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범죄수익은닉 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 7. (생략)

법률명	관련 조문
고용보험법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의3(신고포상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대상 가축을 신고한 자(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